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700명 → 742명 (증 42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88명 → 730명 (증 4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변동없음)

나.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700명 → 742명 (증 42명)
- 정 무 직 계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계 : 675명 → 717명 (증 42명)
- 4급 : 3명 (변동없음)
- 4~5급 : 1명 (변동없음)
- 5급 : 31명 → 32명 (증 1명)
- 6급 이하 : 639명 → 681명 (증 42명)
- 전문경력관 : 1명 → 0명 (감 1명)
- 연 구 직 계 : 3명 (변동없음)
- 지 도 직 계 : 20명 → 21명 (증 1명)
- 별 정 직 계 : 1명 → 0명 (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불임(비용추계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9.29.~10.09)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0명”을 “7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8명”을 “7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2	74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717				
4급	3	3				
4~5급	1			1		
5급	32	16	2	5	1	8
6급 이하	681	681				
전문경력관 소계	0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21	21				
지도관	1			1		
지도사	20	20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00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88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742명-- -----.</p> <p>1. ----- 730명</p> <p>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정원 42명 증가(700명 → 742명)
- 나.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함.
- 2) 보수인상율 연1.8%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

나. 추계결과 : 2,043백만원 / 1년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원	2,042,750천원	◦5급 30호봉 기준 ⇒ 86,315천원 × 1명 = 86,315천원(증) ◦6급 16호봉 기준 ⇒ 63,806천원 × 11명 = 701,866천원(증) ◦7급 11호봉 기준 ⇒ 51,891천원 × 14명 = 726,474천원(증) ◦8급 5호봉 기준 ⇒ 39,003천원 × 10명 = 390,030천원(증) ◦9급 4호봉 기준 ⇒ 34,467천원 × 7명 = 241,269천원(증) ◦지도사 3호봉 기준 ⇒ 38,604천원 × 1명 = 38,604천원(증) ◦전문경력관나군 38호봉 기준 ⇒ 79,919천원 × 1명 = 79,919천원(감) ◦별정직(6급상당) 13호봉 기준 ⇒ 61,889천원 × 1명 = 61,889천원(감)	

다. 채용조달 방안 : 자체채원 및 지방교부세 채용

3. 관련 의견

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340,459	2,079,519	2,116,949	2,155,055	2,193,846	8,885,828
일반회계	340,459	2,079,519	2,116,949	2,155,055	2,193,846	8,885,828
재원 조달	340,459	2,079,519	2,116,949	2,155,055	2,193,846	8,885,82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0,459	2,079,519	2,116,949	2,155,055	2,193,846
	지방세	340,459	2,079,519	2,116,949	2,155,055	2,193,84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